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25)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426)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개요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1. 기후인지 예산제도 도입(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2. 기후인지 결산서 도입(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3.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I. 개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에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

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

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5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기후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예산서”라 함)를 제출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기후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인지적 운용 및 분석

8. (생략) <u><신설></u>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 14. (생략) ②·③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u>방안</u> 8.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기후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기후인지 예산서</u> 8.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인지 예산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기상청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에 비해 높아¹⁾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폭염 발생의 빈도와 강도 및 지속성도 197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열대야의 발생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²⁾

1) 1980년대: 12.2℃, 1990년대: 12.6℃, 2000년대: 12.8℃

2)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2020. 7.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18240호, 2021. 6. 15.>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에만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영향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분석·평가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⁵⁾.

최근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변화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지방재정 전반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후변화 관련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며,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방재정 지출을 조정하도록 하여 재정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출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여부에 차이가 있는바, 일부 지방자치단체⁶⁾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기준 양식

5) 또한, 개정안은 기후인지 예산서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⁸⁾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예·결산과 직접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그 효과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데, 이를 단년도 기준의 예산과 연계하여 성과목표를 세우고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2024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도 자체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강원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참고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7월 26일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는데, 가이드라인(안)에 포함된 작성양식에는 세부사업별 감축사업 분류와 온실가스 감축예상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둘째, 기후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⁹⁾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초기('23~)로서 국가도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방에서도 도입 준비 중인 점¹¹⁾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후인지 예산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2021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사업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계량이 용이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2024.09.30. 발의

10)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2, 2024.09.30. 발의

11) 환경부 주관, 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24.11.)

2. 기후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결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기후인지 결산서</u> 5.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기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는 기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기후인지 결산서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기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함)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4(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의5(기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

	<u>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후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u>③ 기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기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기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337